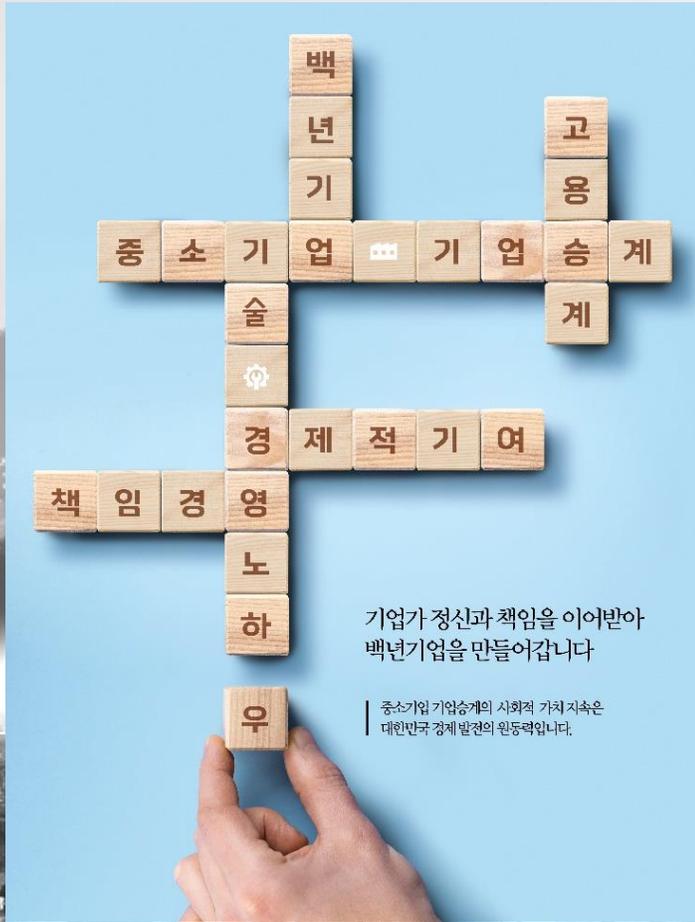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2023. 11. 30(목)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상근이사
경영학박사 추문갑

Contents



01. 장수기업 정의	1
02. 장수기업 현황	2
03. 장수기업 경영형태	3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5
05. 장수기업의 경제적 효과	11
06. 당면 현안	12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16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25
09. 정부의 기업승계 제도 추가 보완 방향	30

01 장수기업의 정의

해외

- 통상 100년 이상, 2대 이상 선조의 가업 지속 기업
- 일본은 작지만 100년 넘는 유서 깊은 업체(老鋪)

한국

- 평균 수명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생존하는 기업으로
업력 30년 이상 기업으로 규정(명문장수기업 : 45년 이상)



02 장수기업 현황

한국 장수기업 현황

➤ 100년 이상 : 15개 + 1개(99년)

DOOSAN (1896)

 동화약품(1897)
SINCE 1897

 신한은행 (1897)

 우리은행 (1899)

 몽고식품주식 (1905)

 광장시장 (1911)

JOSUN
HOTELS &
RESORTS (1914)

 Sungchang(1916)

 (1917)
KR MOTORS

 株式会社 경방 (1919)

朝鮮日報 (1920)

동아일보 (1920)

강원여객자동차(주)(1921)

(주)대륙지에스(1922)

meritz
메리츠화재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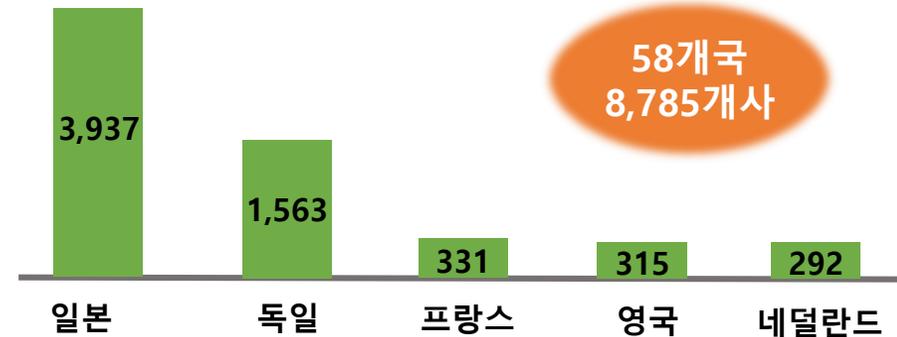
 samyang (1924) *99년

세계 장수기업 현황

➤ 100년 이상



➤ 20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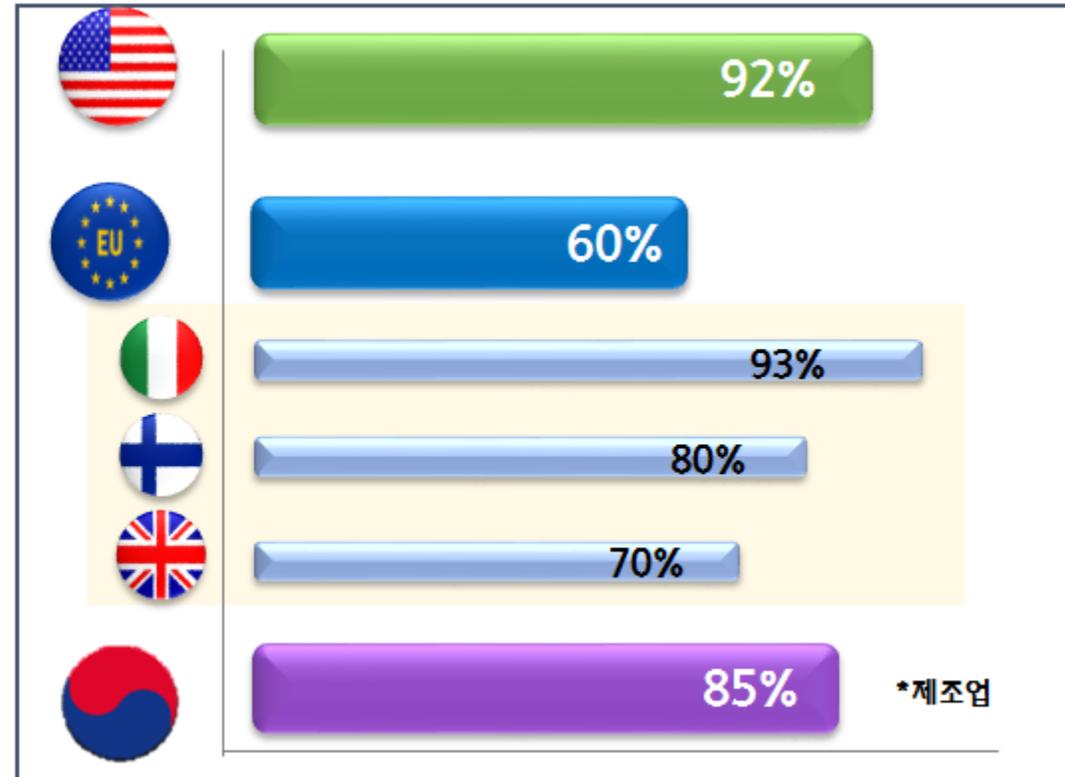
03 장수기업의 경영형태

➤ 세계적인 장수기업 대부분 가족기업

- 미국 : 약 92%(포춘 500대기업 중 35%)
- 유럽 : 60%이상
(이탈리아 93%, 핀란드 80%, 영국 70%)

➤ 한국 기업의 대부분도 가족기업

- 전체 제조업의 85%
 -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
-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롯데 등
상호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 대부분 가족 기업)



03 장수기업의 경영형태

지분을 소유한 가족(오너)이 직접 경영

장단점

(장) 단기 실적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임경영 가능

(단) 지분을 둘러싼 가족과 갈등 or
경영수업을 받지 못한 후손의 경영권 승계

주요기업

LVMH
MOËT HENNESSY • LOUIS VUITTON

FERRERO
ROCHER®


TOYOTA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체계

장단점

(장) 실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

(단) 단기 실적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주요기업





Wal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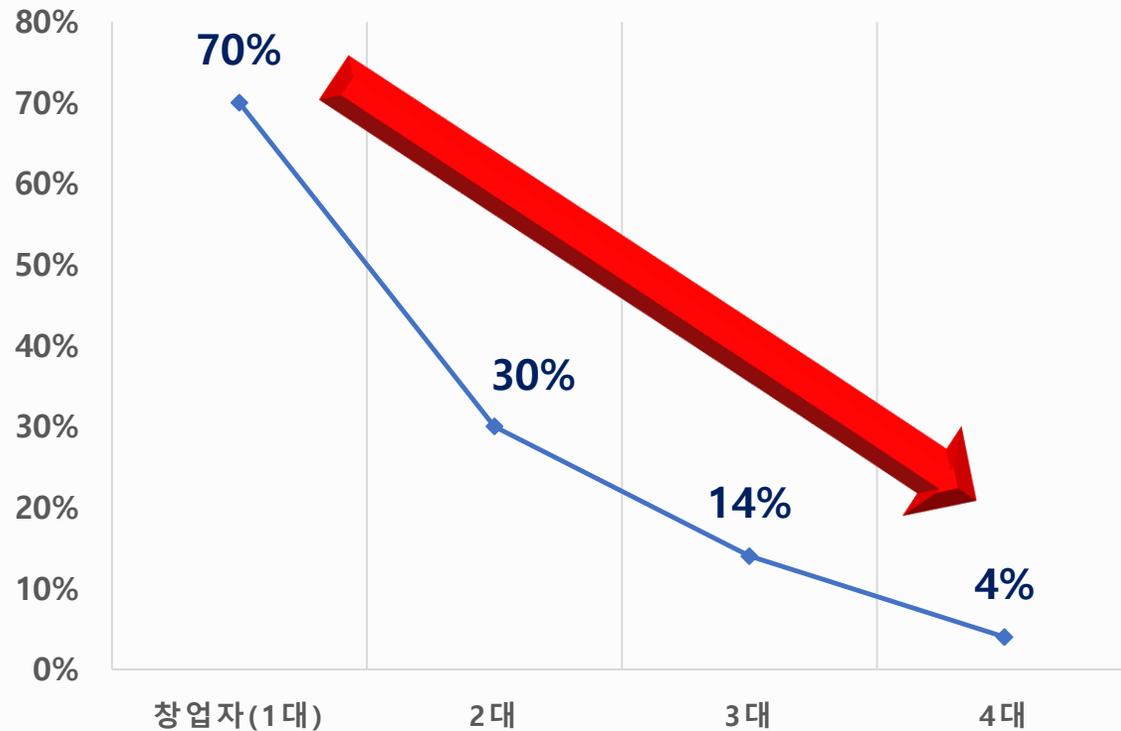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 신뢰(사회적 자본)

<가족기업 생존율>



출처 : John L. Ward <Keeping the Family Business Healthy>

- 가족기업이 장수경영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 가족문제와 승계문제, 곧 “신뢰의 문제”
- 아시아 가족기업 5개 중 3개사가 경영 분쟁

“세계적인 장수기업들은
건강한 가족관계와
강력한 기업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 할애”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 혁신

(주)보진재

1912년 설립

4
대
째

일제강점기 잡지
1950년대 국정 교과서
1970년대 대학예비고사 시험지
전세계 성경 30% 인쇄한 **100년 인쇄기업**

인
쇄
출
판
업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 인쇄업 불황
10년째 적자 지속

2020년 청산

말표산업(주)

1955년 설립

3
대
째

변
화
시
도



구두약 생산으로 시작



2014년 남성화장품(헤어왁스) 진출



2020년 CU 협업 말표맥주 출시



2022년 NFT 시장 진출

2022년 구두약 매출은 전체의 5% 불과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 정책

한국의 장수기업 지원정책

1. 기업승계 지원제도	2.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600억 한도)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가업승계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우수 기업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 ✓ 선진제도 발굴,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 중기중앙회내 설치 : '08.4월)
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4.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종 45년 이상 영위('22년 기준, 37개사)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방송·신문 등 미디어 홍보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등 16개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년가게) 업력 30년 이상 영위('23.9월, 1,424개사 지정) -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 (백년소공인) 업력 15년 이상 영위('23.9월, 959개사 지정) - 제조업 15년 이상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 홍보, 판로, 시설, 금융 등 정책 지원 - 중기부, 백년가게육성방안 발표 : '18.6월)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 정책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대 상

- **업력 45년 이상,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목 적

- 우리사회에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확산
- 수출·인력·자금 등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 혜 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 설치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선정현황

- 37개사 ('22년 기준)



04 장수기업 성장 요건 : 정책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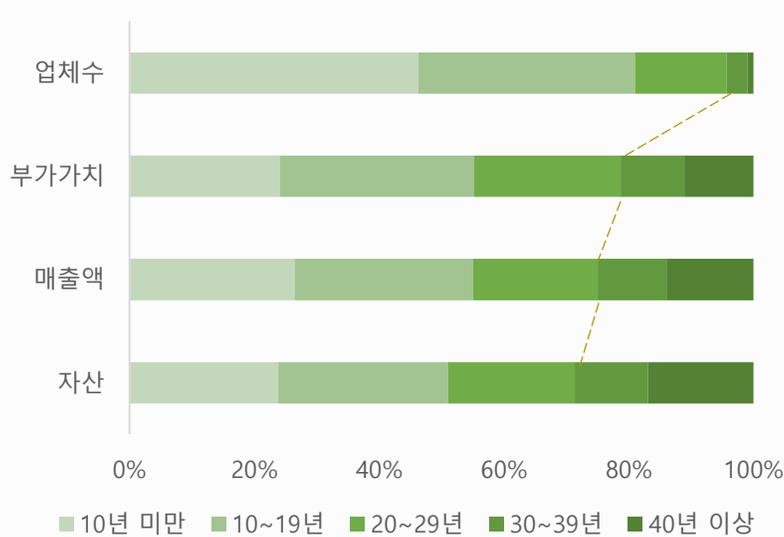


백년가게	구 분	백년소공인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대상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소기업 규모 이하인 사업자
3년 *기간 종료시 재지정 평가	지정기간	5년 *기간 종료시 재지정 평가
(홍보)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등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행사 및 전시 등 지원 (시설) 안전 컨설팅, 매장환경 등 경영환경 전반 개선 지원 (우대지원)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	혜택	(홍보)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등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행사 및 전시 등 지원 (시설) 안전 컨설팅, 작업공정 등 경영환경 전반 개선 지원 (우대지원)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
1,424개사 ('23. 9월 기준)	선정현황	959개사 ('23. 9월 기준)

05

장수기업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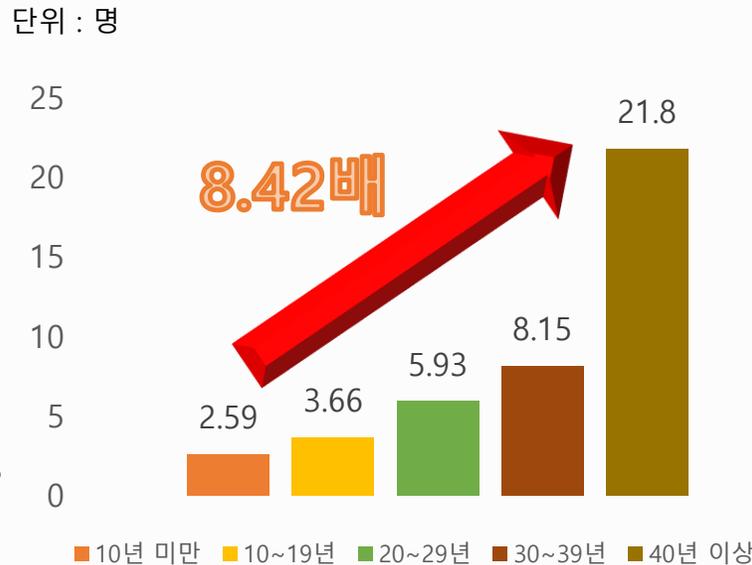
업체 수 대비
높은 경제적 기여도



업체수 4.3% 매출액 21.3%, 자산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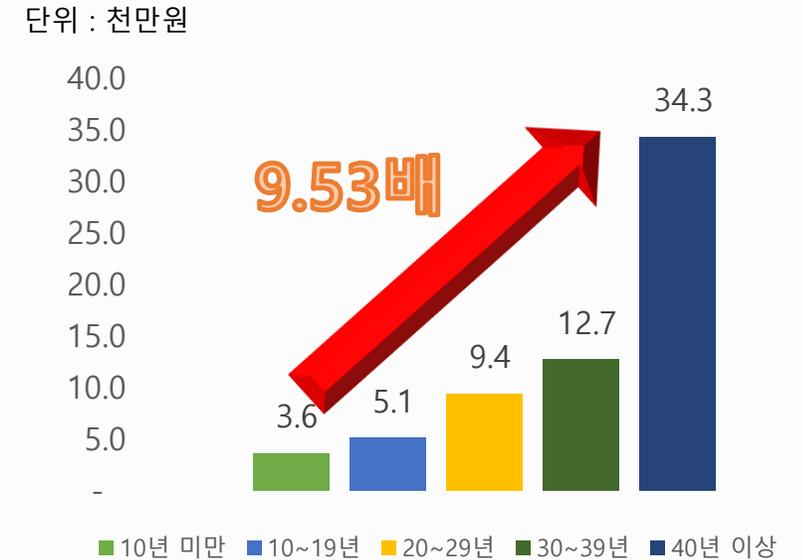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업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고용 능력



업력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업력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기술투자



업력에 따른 평균 연구개발비

06 당면 현안



급속한 고령화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

06 당면 현안 : 급속한 고령화

➤ 늙어가는 대한민국, 늙어가는 기업

시대는 디지털 전환 요구, 대표자는 아날로그 세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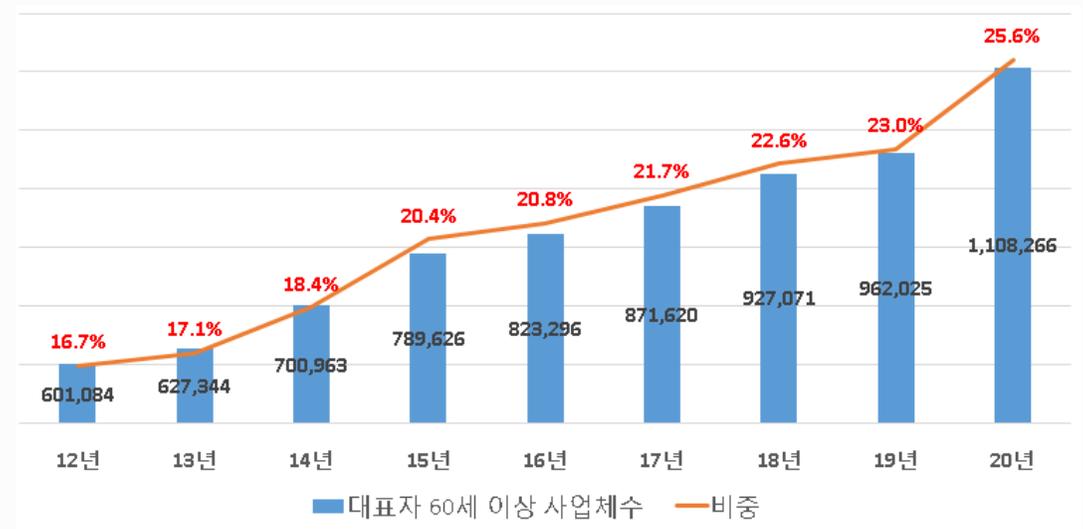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 자료 : OECD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

〈60세 이상 대표자 사업체 수 및 비중(전국사업체조사)〉



대표자 60세 이상인 사업체 111만개(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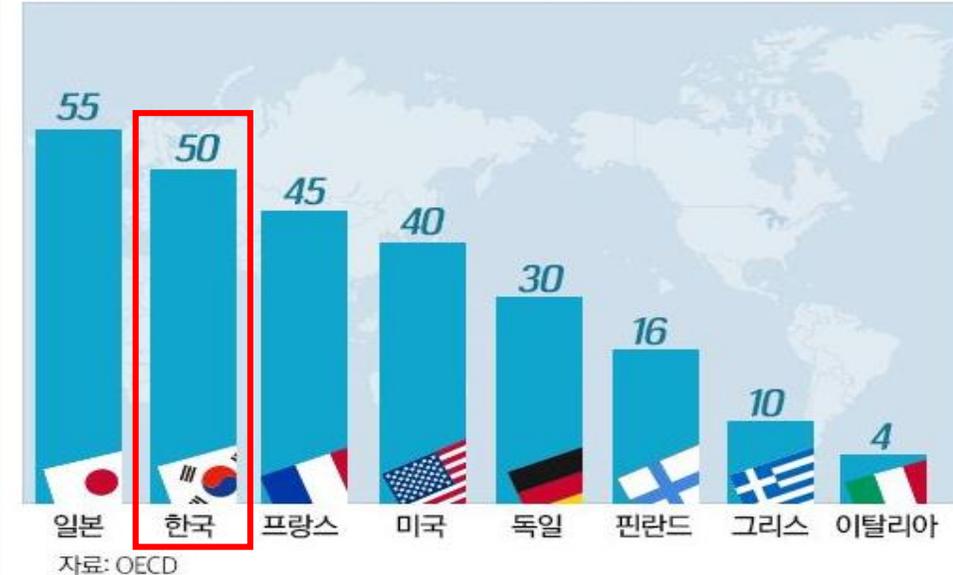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 25,600명('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06

당면 현안 : 과도한 세부담

- **韓, 상속세율 50%로 세계 최고 수준(일본에 이어 2번째)**
* OECD 평균(25.3%)의 약 2배 수준
- **韓,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21년 기준)**
* OECD 평균(0.42% 추정)의 약 6배 수준
- **기업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
- **OECD 38개국 중 17개국 상속세 없거나 폐지**
상속세 있는 국가는 직계상속에 대해 대부분 낮은 상속세 부과
* 영국 보수당 “이중과세 부담” 상속세 폐지 추진 시사('23. 8월)
- **우리보다 상속세 높은 일본 “기업승계”에 대해 ‘18년부터 세금 유예해주는 등 적극 지원**
* 「경영승계원활화법」(2008.5월) 제정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의 OECD 주요국 비교〉

구분	한국	벨기에	일본	미국	독일	OECD 평균
2019	1.59	1.45	1.31	0.40	0.52	0.35
2020	1.93	1.53	1.31	0.46	0.67	0.38
2021	2.42	1.72	-	0.47	0.69	0.42(e)

(자료 : OECD Statistics,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Tax revenue as % of total taxation)

06 당면 현안 : 사회의 부정적 인식

-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의 대물림”
- 부동산, 현금을 물려받는 일반 상속과
기업을 받는 기업 승계를 동일시
- 승계가 되지 않고 기업이 매각 되거나
폐업했을 때, 그 피해는 국가와 사회의 몫
→ 기업 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영속, 책임의 대물림”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한국, 독일, 일본의 제도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상속·증여 차등	· (상속) 600억 한도 공제 · (증여) 600억 한도 저율(10%, 20%)과세	· 상속·증여 85%~100% 공제	· 상속·증여 100% 납세유예 (‘18년부터 특별조치 시행)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5년 · 가업유지 : 대표이사 유지, 휴·폐업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 ※사전요건 :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 가업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 상속 지분 유지 · 고용유지 :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평균 90% 이상 유지	· 일반공제 : 85% -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 유지 - 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 유지 - 비사업용 자산 50% 이하 유지 · 특별공제 : 100% - 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 - 급여총액 7년간 700% 이상 유지 - 비사업용 자산 10% 이하 유지	· 사후관리기간: 5년 · 대표이사 유지 · 상속지분 유지 · 고용유지 - (개인) 없음 - (법인) 경영환경 감안 80% 유지 못해도 인정
활용률 (평균)	최근 5년간(‘18~’22년) (가업상속공제) 110.8건 (증여세 과세특례) 225건	최근 5년간(‘17~’21년) 10,243건	최근 5년간(‘16~’20년) 885건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가업상속공제

경영자 사후에 상속세 부담 경감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적용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 600억까지 저율과세**(60억 이하 10%, 60억 초과 20%)

✓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사전)적용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적용대상	좌동
대분류 내 변경 가능	업종유지	좌동
최대 600억원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한도 (특례한도)	좌동
최대주주&지분 40%이상(상장 20%) 10년 이상 보유	지분요건	좌동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	-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인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5년	관리기간	좌동
신고기한 내 임원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5년간 유지	취임요건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5년간 유지
중분류 내 변경 가능	업종유지	좌동
근로자수 또는 급여액 90% 이상	고용유지	-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자산유지	-
5년간 지분 유지	지분유지	좌동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후계자의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20년 분할납부)

✓ **상속세 연부연납 (사전)적용요건**

❖ **일반 증여세 연부연납(5년 분할납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없음

✓ **일반 증여세 연부연납 (사전)적용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최대주주&지분 40% 이상(상장 20%) 5년 이상 보유	지분요건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가업영위기간 30%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5년 중 3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	-
18세 이상,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 (수증자)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기간	5년

※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연부연납제도 부재로 일반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5년) 이용**
→ **상속세 연부연납과 동일하게 가업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 제도개선 필요**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사후관리요건

✓ 일반 증여세 연부연납 사후관리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최대주주 유지&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취임요건	-
가업용 재산의 50% 이상 처분 제한	자산유지	-
-	업종유지	-
-	고용유지	-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상속세 납부유예**
 기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 **증여세 납부유예**
 기업승계를 받은 수증자가 상속받은 기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

✓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사전)적용요건**

✓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의 (사전)적용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적용대상	좌동
대분류 내 변경 가능	업종유지	좌동
최대주주&지분 40%이상(상장 20%) 10년 이상 보유	지분요건	좌동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①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	-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인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07 기업승계 지원제도 소개

✓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의 사후관리요건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계속	관리기간	좌동
신고기한 내 임원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5년간 유지	취임요건	수증인 가업종사 계속,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5년간 유지
-	업종유지	-
5년간 근로자수 또는 급여액 70% 이상	고용유지	좌동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개인사업자 한정)	자산유지	-
지분 유지 계속	지분유지	좌동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기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업종변경 제한
-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막는 경직된 요건
- 獨·日은 업종변경 제한요건이 없으며, 日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08년)'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면서도 승계기업은 업종변경시 기업승계 지원제도 이용불가능한 모순 발생

❖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적용요건	대분류 내 변경허용	업종변경 제한 폐지
사후관리	중분류 내 변경허용	업종변경 제한 폐지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②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84% 가업승계 방식으로 **사전증여**(일부 사전증여 후 상속 48.2%, 사전증여 35.8%) 선호
*자료 : '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600억원으로 확대**에도, **연부연납기간 및 세율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
- 사전증여 지원을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운영중이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제한적**

❖ 개선방안

구분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대상	매출액 5천억 미만 개인+법인	매출액 5천억 미만 법인 한정	개인사업자 포함
한도 및 세액	최대 600억 *가업상속재산 100% 공제	최대 600억 *60억 이하 10%, 초과 20% 과세	금액 관계없이 10%
연부연납	20년(10년 거치 가능)	5년	20년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③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 1인이 다수의 상속인에게 가업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
- 1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1인만 활용 가능
 - 2세대 기업승계인이 다수인 경우, 3세대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1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동업 및 공동 창업 등 1개 기업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1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기업승계 지원세제 활용제한으로 기업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동업 및 공동 창업 관련 현장 사례〉

- 친구관계인 甲과 乙은 공동 창업하여 A회사를 설립, 각각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
- 甲이 乙보다 먼저 사망, 乙은 甲의 아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과세관청의 해석상 乙의 아들은 甲의 아들이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乙의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1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최대주주 중 1인이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했더라도, 다른 최대주주도 활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④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업무관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①비사업용 토지 ②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③대여금 ④과다보유 현금 ⑤영업활동과 무관한 금융상품

-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분류,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 승계 현장에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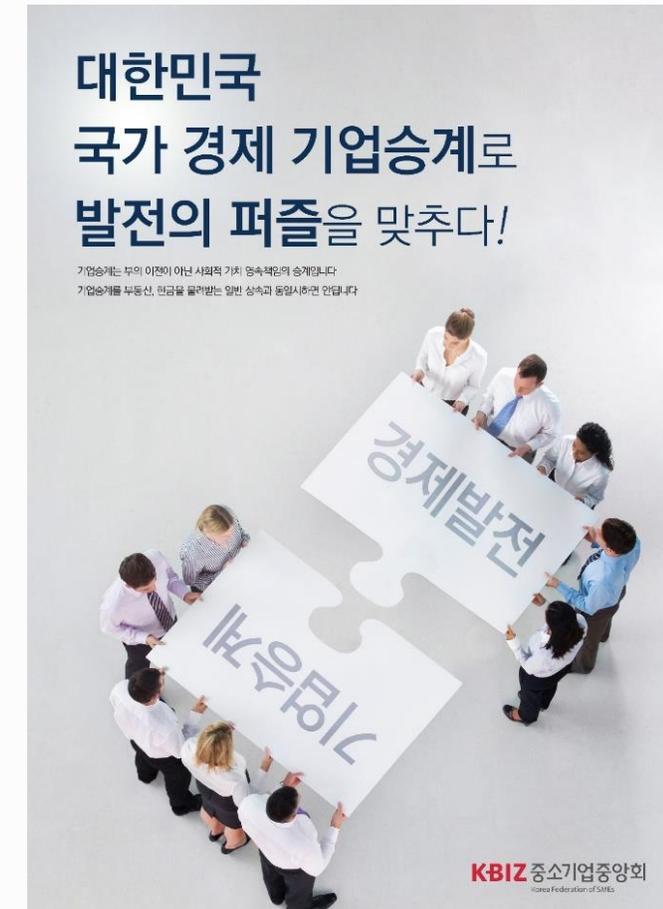
❖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사업무관자산	①비사업용 토지	유지
	②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임직원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 등은 제외
	③대여금	임직원 등에 복지를 위한 대여금 등 제외
	④과다보유 현금	삭제
	⑤영업활동 무관 금융상품	삭제

08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

(가칭) 「중소기업승계지원법」 제정

- (현황) 기업승계 세제에 대한 모든 사항,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요건 변경 어려움
 - (일본) 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세법에서 규정,
대상 및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용이
 - *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2020년 「중소기업성장촉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승계 지원정책 시행 중
- 장수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제도에 기반한 후계자 육성, 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의 승계 활동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 필요



09

정부의 기업승계 제도 추가 보완 방향

2023년 세법개정안 반영(정기국회 상정)

①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가액	세율		재산가액	세율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이하	기본공제	→	10억원 이하	기본공제
	10억~60억원	10%		10억~300억원	10%
	60억~600억원	20%		300억~600억원	20%

② 업종변경 제한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업종변경 제한	(사후)중분류 내 변경 가능	→	(사후)대분류 내 변경 가능

③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감사합니다